

제43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정기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
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6)
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9)
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1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3)
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9)
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4)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2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7)
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193)
2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29.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30.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3)
3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5)
33.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3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8)
3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7)
3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8)

상정된 안건

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3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3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3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10
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 11
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12
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6) 12
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9) 12
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12
1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12
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12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3) 20
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9) 20
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20
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22
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23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3) 24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4) 24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4) 26
2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27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	27
22. 마린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27
23. 마린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7)	27
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32
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32
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193)	35
2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35
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36
29.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38
30.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3)	38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선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22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10시12분)

○소위원장 김선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조경태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실시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때 해경청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추가하도록 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에서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신체검사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의 변경지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행기관 등의 지정 이후 인력·장비·시설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별도로 변경지정을 받도록 한 것으로 위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확대·축소 발급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1급, 제2급, 요트자격증은 각각 발급되고 있지만 1개의 면허증으로 통합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4번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조종면허 시험·교육 업무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교육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5번 조종면허 관련 대행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시험대행기관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 3개 대행기관 모두에 대해 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의 지정 이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6번 기상특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기준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지만 기상청에서는 차등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1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조종에 대한 벌칙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총톤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간별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과 처벌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자에 ‘조종하게 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의무 위반 규정을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번 주취 조종 재위반자의 벌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형 확정 후 10년 이내 재위반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반복적인 주취 조종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3번 주취 측정 불응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재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본래 취지에 비추어 ‘조종하게 한 자’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임호선 의원안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1번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약물은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번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조종면허 취소·정지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면허정지 처분으로 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3번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취측정 거부와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에 대한 양 벌칙 체계의 균형을 위해 앞서 검토한 윤준병 의원안의 주취측정 거부와 측정 처벌 규정을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약물 복용 측정 거부의 처벌 규정을 일치시킬 경우에 약물 복용을 하고 조종할 때 현행 규정의 벌칙이 약물 복용 측정 거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 5t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윤준병 의원안의 주취 조종 재범 규정 등을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였고 변경지정, 조종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 대행기관 등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에 신체검사 추가하는 거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니다만 혹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또 불이익을 당할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런 부분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장애인이 몇 퍼센트,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보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에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상레저인구가 점차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게 법이 잘못되게 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차별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전담직무대리 정육한 구조국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체검사 관련된 내용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력과 청력에 대해서만……

○이상휘 위원 아, 그 두 부분만?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전담직무대리 정육한 예. 2개에 대해서만, 아주 필요한 내용만 딱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고요. 최소화해서 장애인분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법 취지에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또 국민편의를 위해서 건강보험을 받는 검사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위법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정립이 돼 있는 거지요? 기준을 시력과 청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런데 일단 이 법안에서는 시력하고 청력만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조승환 위원 그것은 법안에서가 아니라 신체검사 기준에 들어가 있겠지.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신체검사 기준은 하위법에……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하위법에 들어가 있겠지요.

저도 이상휘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검사 기준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단순히 운전면허시험이나 이런 기준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차가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돼 있는데 선박 같은 경우, 특히 수상레저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참 저도 신체검사 규정을 보면서 그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분이 면허를 받는 현상이 생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3번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그러니까 1급·2급·요트 면허 3개 중에 2개를 따면 통합면허를 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것은 1급·2급·요트 면허 3개로 돼 있는데……

○조승환 위원 3개로 돼 있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현재에도 1급·요트 발급을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면허를.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규정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승환 위원 청장님 설명이 내가 지금 펴득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면허, 2종 면허 갖고 있으면 1종 면허만 해서 통합시키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요트가 들어가는 게 좀……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고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1급 면허 같은 경우에는……

차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1급 면허와 2급 면허의 차이가 뭐예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1급은 사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면허고요 2급은……

○조승환 위원 그러면 사업자 아니면 1급 못 받으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1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급 면허는 무면허자를 데리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면허고 2급 면허는 그게 안 되는 면허고 이게 제일 큰 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급·2급 면허를 합치는 것은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1급·2급 면허를 합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급 동력레저 면허하고 요트 면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통합이 돼서 1급 면허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급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1급을 따면 통합은 됩니다. 통합은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트 면허까지 통합을 시키면 국민편의를 위해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게 난 펴득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덩기요트 면허를 가지고 2급 면허를 내가…… 동력레저보트 2급 면허를 가지고 있고 덩기요트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급 면허에 준하는 걸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이건 면허중에 관한 거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1급하고 요트 면허하고 2급하고 요트 면허를 면허증을 1개로 발급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편익을 주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당초에는……

○조승환 위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주철현 위원 청장님, 제가 2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조승환 위원 저도 2급 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2급 면허 가지고 있으면 요트 면허도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안 줘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2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트 면허를 따게 되면 통합면허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면허증이 1개다 이런 뜻입니다.

○조승환 위원 아, 면허증이 1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증 하나에, 오늘 내가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는데 2급 요트 이렇게 같이 붙여서 면허증을 하나로 주겠다 이 이야기인 거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하나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승환 위원 되게 어렵게 이야기했네, 간단한 걸 가지고.

○소위원장 김선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현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마저 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그것은 마무리됐고요.

또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전문위원께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종하게 한 자’, 이게 지금 어선법이나 낚시관리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조종하게 한 자도 처벌을 합니다.

○조승환 위원 하게 돼 있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조승환 위원 그러면 조종하게 한 자도 처벌하는 걸로 가는 게……

전문위원님.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위원님,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레저보트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거의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러니까 낚시어선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다릅니다, 해상교통법상 다른 배하고. 그래서 레저보트 경우에는 면허 가진 사람이 직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종하게 한 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조승환 위원 레저보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차장님 면허 가지고 있는데 나는 면허 없는데 같이 술 먹자고 그래 가지고 술 막 먹여 놓고 ‘차장님, 운전하시오’ 하면 처벌받아야지요.

○전문위원 이현종 위원님, 전문위원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금지의무와 처벌조항에 따른 표가 있습니다.

맨 밑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보면 제27조제1항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의무가 조종하는 사람에게만 있고 조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금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종하게 한 자는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27조제1항에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넣어야 처벌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네요?

○전문위원 이현종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요. 이걸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선교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면허 없는 분들이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없더라도 공범이론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형법상 처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행정법규에다가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인데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지규정도 같이 넣어 주는 것이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것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해경이 직접 신체검사 실시할 겁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이것은 위탁을 할 거고요. 건강보험에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하위법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하는 그러지 말고 해양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규정하는 신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운 것 같은데, 규정하는 신검을 해야 된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런데 다른 법안하고 축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용어 선택에서……

○주철현 위원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마치 해경청에서 직접 신검을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걸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전문위원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정 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 7조의2에 해경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해서 해경청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체검사의 소관, 관리 주체는 해경청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또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이런 식으로 규정된 입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개정안 7조의2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현 위원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 차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부 관계직원들이 참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10시33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입니다.

2번 자료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류세 보조금을 경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과 중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자가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업 계인 화물자동차 운수업과의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유류세 보조금’ 약칭을 삭제하고 ‘유가보조금’으로 약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도 ‘유가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부 및 기획예산처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수정의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6년 5월 29일 이후의 유류 구매비용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도 이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차관님, 개정 취지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하고 실제 돈 지급하는 것하고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자원안보위기라는 게 네 단계지요? 주의, 경계, 심각…… 심각이 제일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심각이 마지막입니다.

○이상희 위원 맞지요? 심각이 마지막이지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이 법이 된다고 그러면 이 4단계 중에 어느 쪽 단계에서 시행

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면 1단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게 재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괜찮으신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유의 경우 1943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자원안보위기 발령했을 때 평균가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선박에서 월 약 32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유의 경우는 월 14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휘 위원 중유가 훨씬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5월 29일 날에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화물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것 한다고 그러면…… 이미 유류 구매가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증빙이라든가 지급계획이라든가?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저희들이 5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금액 부분을 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차관님께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까마는 어선 쪽에서 중유 부담비, 이것은 어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 법 만들어 놓고, 이게 나중에 돈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걸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관심 단계에서부터 지급한다 그러는데 관심 단계에서부터 지급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그런데 이게 화물 운수사업법하고 개정 취지도 같고 내용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상휘 위원 거기에 적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거의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민들이야 관심 단계에서부터 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6)
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9)
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5)
1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10시39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7건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3번 자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공사·작업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관리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적합확인서 발급 전 개발사업 착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계획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해당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이행명령을 할 때는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규정한 관리계획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앞서 수정의견대로 이행기간을 정할 경우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고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도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유실 컨테이너도 항행장애물의 일종에 해당되므로 항행장애물 보고를 규정한 현행 24조의 적용은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던 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와 측정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의 비교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도로교통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임호선 의원안으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약물·환각물질 투약 등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제40조제2항제2호 위반에 한정하고 있고 임호선 의원안은 제40조제2항 전체 및 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관련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 40조 2항의 경우 김상훈 의원안처럼 2호만 적용하고, 안 40조 3항의 경우 임호선 의원안처럼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의 수행 중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 장, 수정의견 박스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문대림 의원안의 문언에 따르되 관리·감독의 방법·범위를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절차 등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좁은 수로나 항로를 지정·고시하고 지정된 좁은 수로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여객선 컨테이너비아 2호 좌초 사건을 계기로 도서·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판례·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은 좁은 수로 해당 여부를 지리적 조건, 통항 선박의 종류·크기·교통량, 자연적 조건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일률적 지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도 좁은 수로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일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해수부 및 관계기관에서 개정에 신중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해수부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약물 운항 측정 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재위반 시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하며 양벌규정의 인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호선 의원안을 따르되 법무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벌칙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5t 미만 한국 선박의 음주 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의 벌칙·과태료 신설 및 상향 내용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앞서 수정의견대로 안 제12조의2 5항을 신설할 경우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착공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도 미수립·미제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의안별로 시행일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입니다.

바로 다음 장 수정의견 박스를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안전수역 및 관리계획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일부 규정은 적용례와 경과 조치를 두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약물이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선박 운항자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등의 안전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좁은 수로등은 선박의 크기, 통행량 등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40쪽, 41쪽 좁은 수로등 지정 및 재검토 근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74조의 좁은 수로등이라고 하는 좁은 수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좁은 수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이게 각 관리청, 지방청마다 해역에 대해서 좁은 수로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 지방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좁은 수로를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실제 선박 크기도 상이하게 다 다르고 통행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74조에 좁은 수로라는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자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윤준병 위원 오히려 74조 규정을 잘 준수하려고 그러면 지정이 돼야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조금 더 제고시킬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좁은 수로에 대해서 항행안전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좁은 수로등의 오른쪽 끝에서 항행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좁은 수로에 대한 지정을 안 하면 이게 사문화된 조문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를 들면 10만t급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길이가 약 300m 정도 되는데요. 좁은 수로라 하면 300m의 약 16배를 곱한 정도의 해역을 좁은 수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에 대해서는 오른쪽 끝으로 항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1만t급 선박, 200m 정도 되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수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좁은 수로라고 지정해 가지고 모든 선박을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선박의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좁은 수로에 대해서 오른쪽 끝으로 안전 항행하라는 부분은 그 해역 자체의 사이즈가, 통행하는 대상 선박이 그 사이즈에 비례를 했을 때 좁은 수로라고 간주가 되게 되면 그런 안전한 통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좀 이상한데…… 오히려 좁은 수로라고, 물론 지정할 때 수로나 항만의

수심이나 폭, 통항 선박의 길이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좁은 수로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겠는데 실제 적용하면, 그런데 지정도 안 해 놓고 선박별로 알아서 네가 좁은 수로에 대해서는 운행하라 이렇게 하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어떻게 인지를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관제를 할 때 예를 들면 수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선박 사이즈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에 통항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본 규정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좁은 수로를 지정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통항이라는 건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선장이나 관제 에어리어에서의 자율적인 통항을 해 주도록, 그러니까 좁은 항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구역의 설정뿐만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대로 오른쪽 끝단, 오른쪽 끝단이라는 이야기는 양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서 가라 이 소리거든요. 좌현으로, 이리로 가는 배, 이쪽으로 오는 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좁은 수로의 경우에 관제사 판단에 따라서 오늘 물때라든지 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봐서 교행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교행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오히려 오른쪽 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교행을 안 시키고 중앙으로 가라 이런 어떤 운항상 자율적인 측면의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부분에, 말 꺼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정부에 관리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선박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국제 선박들이 다 다니는 상황들 속에서 이걸 정부가 관리하는 수역이다로 딱 고정인 됐을 경우에 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향해 시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배 침수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분쟁에 정부 자체가 휘말려 버리는, 사실 그대로 두면 저들이 알아서…… 그래서 VTS도 사실 Vessel Traffic Service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를 주는 거지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해상교통 하면 해양경찰 업무 같은데 왜 해수부에서 하고 있어요,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해양경찰하고 구분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관련 규정들이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희들이 관련 규정들을 반영해 놓았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글썄, 해상교통 관제도 해경 업무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길게 봐서 해경이 없을 때는 해수부가 직접 관장하는 게 맞았는데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상교통 부분은. 해수부는 좀 더 다른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질서유지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해경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

으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부 규정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 넘기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항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어선이라든가 특히 여객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농무 기준이라든지 야간 운행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던데 교통이라든지 과학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일본처럼 시정 500m는 허용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칼같이 지금 1km를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던데 핑계 대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야간 운행도 많이 허용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어지간하면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다들 안전 의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비들, 장치들이 많이 개발돼서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100%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좀 진취적으로 해서 섬 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저희들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부 해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야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일반 섬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못 따라오니깐 그러잖아요. 왜 자꾸 탁상에서 행정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되고 있어요? 농무 기준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했더니 용역해서 해 보겠다고 그러던데.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정도현** 진행 상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보고만 하지 마시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만 주지 마시고 규제를 완화해서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이상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조금 전에 조사관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좀 우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좁은 수로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몰고 가다 보면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좁은 수로라고 우리가 범위를 특정해 놓으면 그 좁은 수로 안에서는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하게 되면 거기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법적인 분쟁이 상당히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거 하려 그러면 좁은 수로에 대한 범위와 어떤 구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물밑 지도를 다 그려 봐야 돼요. 안내를 해야 돼. 그래야 분쟁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74조 부분이 사실은 좁은 수로라고 한정해 놓은 상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항들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 가지고 사실은 위험성이 높은 수로라는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위원** 저는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이 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수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2조? 5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업인들한테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보면 어업인들이 좀 배제되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어업인 의견도 들어서 안전수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것도 매번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업인들 배제시키지 않고, 전문가 얘기만 다루면 소외된 다음에 나중에 분쟁이 되게 심해질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약물 운행 42조에 보면 측정 거부 자체를 이유로 잘못되면 해기사 면허까지 취소·정지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관님, 지금 해기사도 부족한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내항·외항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항 같은 경우에 해기사들의 연령이 어떤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제가 정확한 나이까지는 모르지만 연령대가 꽤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거의 70대입니다. 다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것도 굉장히 참 애매해요. 상당한 이유로 중지시키고 음주 측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 가다가 멈췄다가 다 뚫고 비틀비틀 지그재그로 간다든가 아니면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간다든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애매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법 취지 자체는 지금 안전 운항이 꼭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운항하는 해기사들의 음주·약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척조항을 만든 거고요.

○이상휘 위원 그건 맞아요. 차관님 맞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요. 약물 하면 안 되는데 현 실태가 60대 말, 70대가 전부 내항 해기사예요. 해기사 없습니다, 이게 우리 큰 문제인데. 이분들한테 이 부분을 단속하고 규제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저희들이 법 시행 전에 적극적인 계도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지금 상황에서 전부 다 스톱해 갖고 측정하면 100% 다 음주예요. 맞지 않습니까?

○주철현 위원 저도 이상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간에 소형 선박에 대해서 일반 대형 선박처럼 똑같은 기준과 양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간에 좀 점진적으로 저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제가 오늘은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항행 중 휴대전화 사용 부분 있잖아요. 이거 너무 검토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해당직을 서거나 배가 도선을 할 때 보면, 요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선내에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TRS 쓰면 결국은 이거 휴대전화 사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선하고 본선하고 도선 사나 도선 보조인력이 도선 업무할 때 TRS 쓰면 이거 벌금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너무 탁상행정이다, 이거 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에는 담지 않는데 그거를 하위법령에다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등, 아니면 선박이 그냥 정박하고 있거나 계류한 상태에는 휴대폰을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써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하위법령에다가 담고자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조승환 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하위법령에 담으면 됩니까?

○전문위원 윤성민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주철현 위원님 또 말씀하실래요?

○주철현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선교 말씀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위법령으로 면죄부를 줘요, 안 되지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수상한 여행물도 전부 다 신고하고 어찌고 다 하고 있는데, 핸드폰 켜 놓고 있는데 운항 중에 오는 전화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상 전화일 수도 있고 한테, 핸드폰 받지 말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이게 선박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이 법 취지 자체는 예전에, 얼마 전에 핸드폰 보다가 선박이 좌초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관련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요.

○주철현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다만 조금 전에 해사안전국장이 설명했다시피 33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에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단서 조항들을 달 겁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핸드폰을 봐야 된다는지 그런 조항을 달아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3)

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9)

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11시06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네 번째 자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중 실습선원의 항해당직훈련 실습시간, 16세 미만 선원의 사용 금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등 해사노동협약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다음 장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 제92조제2항은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선원에 야간작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이 역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 92조제2항의 적용제외 규정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총톤수 500t 이상인 선박은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주기관 추진력 750kW 이상인 선박은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먼저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자격기준 적용대상을 항해당직 부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선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 두 번째입니다.

극지해역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기술적 사항이므로 해양수산부 고시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승무정원이라는 용어를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고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며 승무정원증명서를 최소승무정원증명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6장(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이라도 같은 장의 제66조의2에 따른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

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 등입니다.

수정의견(체계자구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문화된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원관리사업 신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법제처 지적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련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에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 취지상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별칙 규정의 정비입니다. 항해당직 부원 승무 등의 신설과 최소승무정원 변경에 맞춰 관련 별칙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사입법례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의안별 부칙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장 수정의견 박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되 유예기간을 둘 실익이 없는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승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관부·감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 동의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지금 그 특성에 따라 선박 규모라든지 엔진의 출력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현실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장 이정로 선원정책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고 법령상 해석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관련 업단체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하나의, 선박 운영에서의 융통성 자체를 끊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업단체 다 동의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장 이정로 예, 동의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선원복지고용센터 아침에 확인했는데 선원노련에서도 동의했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장 이정로 예, 선원노련이 동의해서 정관도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의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1시14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입니다.

5번 자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구를 통합하는 경우 통합·흡수된 도선구의 도선사를 존속 도선구에 배치하고 도선훈련 이후 신규 도선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통합·흡수되는 도선구의 도선사가 존속 도선구에 배치되는 경우만을 도선훈련·면허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존속 도선구의 도선사가 통합된 새로운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도선훈련 이수 및 신규 도선사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선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신규 구역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를 도선사면허 취소사유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년이 임박한 도선사에게 장기 훈련을 강제하면 실익 대비해서 부담이 커 보이므로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는 승인을 받아서 도선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도선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체계·자구 사항입니다.

8페이지, 부칙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11시16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리청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수정의견은 체계·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장비의 변경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사유와 벌칙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체계·자구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업종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수사 등 자격증 발급 근거 등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앞선 개정안에 따른 체계·자구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7페이지, 부칙입니다.

필요한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4)

(11시19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납입 방법’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만 기재토록 하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취지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제95조 5항의 ‘출자감소’ 역시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납입 방법은 매년 변경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안을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 공제에 대하여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있습니다.

다음 장,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수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7월 달에 중앙회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통합 심사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해수부의 입장은 뭐예요?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강 건너 불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수협중앙회의 전반적인 개선·선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수협회장 선거 자체가 2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선관위에 저희가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선거 시에는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직선제까지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이후에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반적인 선진화 방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해수부가 앞장서서 중앙회장 직선제를 추진했었고 당시에 전국의 수협 조합원들의 80% 이상이 직선제를 찬성했어요. 물론 현직 조합장들은 반대를 했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농협중앙회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합의 민주화 필요하다, 권한 집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지적을 하셔서 지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추진이 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동의를 했어요, 그 부분 수용했고. 산림조합중앙회도 수용을 했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해수부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다 발표가 돼서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부 해수부 아니예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그건 아니고요.

○주철현 위원 부산으로만 이전해서 해양 정책만 잘하면 됩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농식품부는 앞장서서 난리 치고 있는데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참 정말로, 전체 수산인들·어업인들을 위한 수산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차관님,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출하고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21대 때 법안이 발의가 되고 해수부도 앞장서서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해수부에 분발을 촉구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대통령께 일러바쳐야 될 사안인 것 같은 한데,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일선 국민을 보고 또 조합 같으면 조합원들을 보고 행정을 하시고 국가 행정을 펼치셔야지, 지금 조합장 99명 보고 행정 하고 있습니까? 아니시잖아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 차관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내년에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임박해서 입법적으로 이번에 수협법을 설사 직선제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입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수산정책과장입니다.

180일 전에 선관위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9월 21일경에는 위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법안대로 선거가 간선제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서……

우선은 말씀 주셨던 대로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주철현 위원님께서 수협 직선제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저희 부도 적극 참여를 할 예정이라서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친 이후에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준병 위원** 위탁선거 의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위탁선거 의뢰할 때 그 기준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도윤정** 기존…… 위탁 시점의 선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일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법에 따라서 위탁이 진행됩니다.

○**윤준병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2)

(11시26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신청 자격을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 및 기획예산처는 농업의 농지이양 직불제도와 의형평성을 위하여 어촌계원 자격 기간을 10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 결과 동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정부 측 의견대로 현행 유지를 양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은 현행 유지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57)

(11시28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자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정거장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마리나정거장은 어촌 마리나역과 사실상 동일 개념에 해당하고 어촌·어항법 등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해수부 역시 관계부처 이견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개정 취지로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수립 및 변경요청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두 번째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이견이 없으나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마리나정거장 건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 및 해수부 측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구명조끼 착용 지시, 안전운항 관련 사항 선내 게시 및 안내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사항은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업 중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회사가 등록사업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수정의견은 첫 번째 거부 제한 상품에 공제 상품도 포함하고, 두 번째 보험 계약 체결 거부 사유를 좀 더 구체화시켜 위임시키고, 세 번째 보험 계약 체결 거부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시·도지사가 기상 악화 등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 대하여 운항

제한 명령 및 위반 시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로 주취·약물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와 운항제한 명령 위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체계 자구 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 준수,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 장치·기구 조작 금지, 세 번째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의무대상자인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기 명의로 선박을 대여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계 자구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준공 전 사용 미신고에 대하여 기존 벌칙 규정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취지를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이용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항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에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명령·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단계적 제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수정의견에 대하여는 법무부도 이견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벌칙 대상인 미등록 마리나선박 정비업자 중 선박안전법·어선법·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이미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를 벌칙 규정인 38조가 아니라 등록 규정인 28조에서 타 법상 자격 보유자를 등록한 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면 벌칙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므로 이렇게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나아 보이고.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수리업은 인력·설비기준이 부재하여 마리나 선박 정비업보다 등록 기준이 낮으므로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박성훈 의원안 중 마리나정거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예산처 이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추후 검토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어촌마리나, 그러니까 마리나 역 여기에 13개 지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사업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마리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지금 포구나 어항 시설들에 마리나가 입출항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 개별 마리나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거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차를 몰고 가다가 남의 집 앞에 대려고 그러면 남의 집 주인한테 ‘여기 대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지만 여기가 정거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이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더라도 가서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정거장을 지정하고 안 하고는 저는 마리나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사실 어촌마리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고 13개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마리나 운항의 하나의 거점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저는 이것 크게…… 일단 기재부 입장에서는 마리나정거장을 지정을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각종 지원 조항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부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돈 투입의 문제는 추후에 하더라도 마리나정거장 설정하는 부분은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돈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마리나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 그거는 별도로 선별해서 하더라도 일단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요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마리나 유치하겠다는 어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마리나정거장으로 지역별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박성훈 의원안에 대해서는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기재부 의견은, 결국 돈의 문제를 변론으로 하고 가면 기재부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개 어항에 개소당 20억씩 투입을 해서 어촌 마리나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개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기획예산처 입장은 어항법에 따라서도 지금 어촌 마리나역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고시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촌 마리나역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마리나정거장이라는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 조금 예산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수용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조승환 위원** 어촌 마리나역 16개소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어촌어항법이 아니라 마리나항만법에서 지금 이런 법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16개 지역에 20억씩 지원해 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마리나로서의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

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이야기드리는데, 이것도 지적 사항인데 지금 거점 마리나항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담보 상태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지금 이게 모두 몇 개지요, 마리나 항만 거점 마리나가?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10개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전국에 10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조승환 위원 10개 중에 완공된 게 몇 개예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2개가 완공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최소 10년 이상 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자 지정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결국 이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 지정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계획대로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에서도 이런 사항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시계획 승인받은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 후 2년 내에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당한 사유를 좀 추가를 해서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추가로 고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마리나에 대한 사업 진행이 늦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장, 연장, 연장을 통해서 계속 사업자로서의 지위만 확보하겠다는 이런 업권의 형태로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과장님, 완공된 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울진 후포와 창원 진해 명동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울진……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후포.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가 제가 시장 때 이 부분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 되어서 추진이 돼 왔던 건데 제 후임 시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니까, 과장님? 왜 아직 이러고 있어요?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지금 여수시에서 여수 산단이 침체가 돼 가지고

세수입이 1000억 원 이상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섬 박람회 자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는 좀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작년 12월하고 올해 7월에도 이걸 추정이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확인서를 정구를 했는데도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약간 애매한 단계에 있어서 이번 21일 날 해양정책관이 여수시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 국비 예산 290억 원은 이미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됐는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지금 이게 지특 자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수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철현 위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예,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참 답답하네. 하여튼 간에 따로 좀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돼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완전 미루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적 목적 때문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정상 못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좀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위원님, 이 사항이 지금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도 예외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예,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하여튼 신중한 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예.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11시45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만 지원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시중지 기간 동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용재개 검사를 신설하며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명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사용 일시중지 사유를 예시하여 일시중지 사유와 기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령 위임사항에 검사 수수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시정조치 명령 대상 검사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며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등 대상이 대형이면서 노후화된 시설장비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정도는 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각 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최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이행 여부 확인 방법을 소속 공무원의 출입 검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등의 단순 미 실시 자체를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중할 우려가 있고 시정조치 미이행이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등 유사입법례를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되 사용중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정밀 안전진단 등의 미 실시와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맞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미실시는 벌칙에서 과태료로,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서로 바꾸는 게 나아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두 개정안의 병합심사 및 시행일 조정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유예기간을 둘 실익이 없는 조항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적용례 수정과 경과조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이건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수부 입장에서 먼저……

검사 방법, 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정밀검사라든지 검사를 할 경우에 필요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걸로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지금 검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한국선급하고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라는 것은, 사실 법정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어떤 한 쪽이 약자거나 또는 굉장히 공익적으로 검사가 제대로 되기 위한 금액을 확정시키기 위한 이런 게 수수료를 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건 일종의 터미널의 거대기업하고 한국선급이라든지 공공기관 내지는 이런 기관들과의 그냥 계약 관계로 뒤 버리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수수료로 법령화가 돼 버리고 나면 이게 다 물가에,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다 기재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수수료, 검사 방법 이건 굳이…… 사실 검사 방법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성격도 사실 굉장히 아닌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 자율에 두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수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정밀검사의 경우는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빼는 게, 삭제하는 게 어떻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준병 위원** 몇 조지요?

○**조승환 위원** 33조, 34조……

○**전문위원 윤성민** 10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위원** 9페이지, 10페이지.

그런데 해수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합의한다고 그러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에서 전문위원이 이렇게 의견 제시한다고 그래서 덩석덩석 ‘예, 알겠습니다’라고 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고자 제가 언급한 겁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조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받는다면 ‘등’ 자가 있으니까 수수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입법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일단 타법에도 사실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께서 이번에는 있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보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잘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결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빼고 그냥 ‘등’에다 포섭시켜서 이렇게……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입니다.

조승환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수료라는 단어는 빼고 ‘검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등’ 빼면 거기에 포섭시켜서 나중에 규정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30항까지 하겠습니다.

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193)

2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3)

(11시54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정부가 제출하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 중간육성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종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다음 장, 수정의견입니다.

중간육성의 정의를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수산종자의 정의에 중간육성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67조 보상 규정과 68조 보상금의 공탁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장, 수정의견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의 보상을 위해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11시57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사항에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사고 위

협과 선내 기관, 설비 취급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본부에 위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허가 정지를 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사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49조하고 58조 관련인데 위치 통지가,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시다마는 옛날에는 북한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했었는데 요즘은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이런 게 좀 크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AI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치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상희 위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에는 고의성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소형 선박들이 많은데 1차부터 500만 원, 10일 조업정지, 이것 좀 과하지 않습니까? 요즘 바다가 좀 변해 가지고 거의 생선이 안 잡혀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저희가 AIS라든지 무선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선들에 그런 설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정보 자체가 잘못 이루어지거나 저희가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로 바로 직결되고 특히 AIS가 꺼져 가지고 어선 위치를 못 잡게 되면 저희가 구명팀이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 역량에 대한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희 위원 어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과태료가 너무 세다라는 부분을 대부분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게 고의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 장애·두절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치정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자주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장 양호섭 어선안전정책과장 양호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 총 75건이 위반됐습니다. 그 당시에 위성장애로 39건이 정보를 받지 못해 가지고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적발만 하고 단속은 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왜냐면요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천차만별일 수 있습시다마는

통신장비라든가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거라든가 소위 이야기하자면 디지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민들이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위치정보에 대한 준수 의무, 이행 의무를 줌, 규제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어민들의 의견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충분한 계도를 거치고, 말씀하셨다시피 기계 이상이라든지 부득이하게 꺼진 사례들은 저희가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런 조항을 빼게 되면 약 30여 건 정도가 실제로 고의 또는 미신고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이상휘 위원** 차관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계 고장 났는데 이것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도 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국에서 이야기한 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벌금이 적으면 몰라도 10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거기다가 조업정지 10일까지 때려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감내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현실적인 대안도 같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30.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3)

(12시03분)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0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입법취지입니다.

하단의 개선방안 모색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굴의 품질향상, 판매확대, 수출촉진,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김산업법 제정 이후 김이 전체 수산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성장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다음 장, 제정안의 구성체계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김산업법의 체계를 모델로 하여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정안은 대부분 조문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주철현 의원안은 굴 브랜드 육성 등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간 차이점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입니다.

굴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기존 김산업법 구조를 차용하더라도 굴산업 육성에 특화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안 입법과 관련한 부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예산처는 굴산업 지원은 양식산업발전법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될 경우 유사입법이 증가하여 재정 투자 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장, 두 제정안 병합심사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두 제정안은 체계 및 내용이 유사하나 제명 및 목적조항의 정비, 정의조항의 정비, 기본계획 등에 굴 생산의 위생·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주철현 의원안의 굴 브랜드 육성 및 굴융복합산업 육성규정 반영 검토, 실태조사 결과 공표규정 유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제정안 및 굴산업 육성 특화사항을 반영하여 해수부 측과 협의한 수정의견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걸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음,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축조심의 안 해요?

○조승환 위원 이것은 기재부 반대해도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선교 기재부 반대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걸 법률을 정하는 거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제정법인데 축조심의 안 하고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성민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김산업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굴산업의 특성에 맞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굴은 안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수부랑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몇 가지만 집어넣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은 제정법인데 축조심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냐고. 내가 심의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성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축조를 해야지. 제정법인데 왜 축조심의를 안고……

○전문위원 윤성민 그러면 10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철현 의원안은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이 진흥의 기반 조성과 지원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명은 ‘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목적조항은 제정안은 굴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식·가공·수출과 함께 홍보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목적조항도 ‘굴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페이지,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정의는 김산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철현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굴산업에 대한 정의는 김산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굴 종자의 배양·생산을 추가하는 방안, 자연산 굴의 채취 등 어업을 통하여 획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굴의 생산에 대해 어업과 양식업을 포함하는 방안, 굴의 가공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안의 굴 브랜드는 같은 안 제14조의 굴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지역별 굴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의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안 제3조는 두 제정안이 동일하며 법률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는 일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다만 굴의 정의를 김산업법을 참고하여 주철현 의원안으로 하고 굴산업의 정의에 ‘굴 종자의 배양·생산’을 추가하고 굴의 생산에 ‘(어업과 양식업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굴의 가공의 ‘단순 건조’를 ‘탈각, 절단, 건조, 세척 등 단순처리’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4조는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장, 수정의견입니다.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굴 생산의 위생·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굴 종자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굴융복합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의 공표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굴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굴산업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굴 생산기술 개발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굴의 품질향상, 판매확대, 굴과 굴가공품의 소비 촉진,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안 제14조는 굴 브랜드 육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수정의견입니다.

굴의 품질향상에 굴 생산의 위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사업자단체의 설립, 굴 자조금의 적립 지원, 품질인증,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제정으로 봤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굴산업 집적화 단지의 지정, 굴산업 집적화 단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굴산업 집적화 단지 내 굴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굴산업 집적화 단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굴산업 집적화 단지’로, 주철현 의원안은 ‘굴산업집적화단지’로 띄어 쓰기 차이가 있는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굴산업집적화단지’로 붙여 쓰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칙 및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자료제출, 청문,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두 제정안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한 제정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다시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남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선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종합하여 정리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선교 문대립 윤준병 이상휘 조승환 주철현

○청가 위원(1인)

송옥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남재현

정책기획관 이상호

해사안전국장 정도현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구조안전국장전담직무대리 정육한

임시회의록